

인천지방법원 2020. 9. 15 선고 2019나58837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청구]

---

## 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0. 9. 15 선고 2019나58837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19. 4. 25 선고 2017가단28589 판결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이태선

변론 종결 2020. 6. 23.

판결 선고 2020. 9. 15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7가단28589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66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 이 유

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의 '이 사건 판결 선고일'을 '제1심판결 선고일'로 고치는 것 외에는,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민소영

판사임진수

판사신정수